

고객센터(24시간): 1577-9559

www.msangjo.com



※(주)매일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상조서비스 약관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매일상조**(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매일 일정액의 납부유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본 계약의 목적물은 보험 또는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납입금에 대한 이자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2조 (회원의 가입)

1.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시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신 후 이를 회사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반드시 **CMS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모집인을 통한 **회원 가입시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모집인에게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가입하시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모집인을 통한 가입 시 회사의 약관설명업무는 모집인이 대신합니다. 또한,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약관의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가입신청서 및 약관을 교부받은 회원의 제1회차 납입금이 납입된 후)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가입신청서에 표시된 주소로 등기발송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증서의 발부가 늦어질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통지를 회원에게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4.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 회사는 약관의 주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문구로 약관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입절차가 완료된 회원에게 지체없이 회원증서 및 약관을 사전에 통지된 회원의 주소로 등기 발송합니다.
5.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 금5,000(오천)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 제3조 (단체회원 가입)

1.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10건 이상 동시 가입)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2.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3.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여,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합니다.

■ 제4조 (철회권의 행사)

1.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모집인을 통하여 회원에 가입하거나,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가입할 경우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5%의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1. 회원은 계약 시 작성된 계약서의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및 납입횟수는 작성된 계약서에 따릅니다.
3. 회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된 납부방법을 통하여 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한 대리 납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방법에 따르는 **직접 회사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직접 회사에 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은행지포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선납할인)

회원이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	일시납	12개월납
할인율	전체계약금액의 5%	1회납입금의 50%

예시) 12개월납 - 월납입금 60,000원일 경우 : (12개월 × 60,000원) - (60,000원 × 50%) = 690,000원

■ 제7조 (비용의 추가부담)

회사는 회원이 가입 후 아래 기간 이내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기재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15일 이내에 행사 발생 시 상품금액의 5% 추가 금액 부가]

■ 제8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약정금액의 완납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잔여 납부금을 행사 후 일시(장례행사의 경우:발인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9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1.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제10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1. 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2. 회원은 계약 체결 시 정해진 상품에 관하여 차후에 변경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보다 하위상품으로의 전환 및 납입횟수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회이상 1회행사에 한합니다. 또한, 해당 상조서비스의 양도 혹은 증여는 가능하나 양도 전에 회사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11조 (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1.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합니다.

■ 제12조 (상조서비스 제공지역)

1.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조서비스 제공지역	전 국
※ 기타행사(웨딩, 칠순, 돌 등)는 대구지역(상당 후 결정)	

2.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에서 제시된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6%)을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연3%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사정으로 서비스 예정지역의 변경시 회사는 해당지역의 행사기부를 심의하여 회원이 요구하는 대상지역의 행사를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상조서비스의 내용)

1.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1.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실효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회복신청을 회원이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의한 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회원은 계약의 해지 전까지의 연체금과 연체금의 3%의 수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 다시금 해당 구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이 해약환급금의 청구 기간이 경과된 경우 해당 환급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1.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서비스(동회사의 타 패키지상품)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산식

$$\text{환급금} = \text{상조적립금} - \text{모집수당공제액}$$

*상조적립금 = 납입금누계 - 관리비누계

*모집수당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frac{\text{기납입월수}}{\text{총납입기간 월수}}$)

3.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실제로 납부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원본인 :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리인 :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신청서
7.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만기 이전 환급에 관해서는 **표준해약환급금표에 의하여 환급하며 만기 후 1년 예치 후에는 납입금의 90.0%, 2년 예치의 경우 납입금의 95.0%, 3년 예치의 경우는 납입금의 100%(전액)를 환불합니다.**

■ 제16조 (회원지위의 양도, 명의변경)

1. 회원이 장례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경우 명의변경에 관한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소정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 발행된 회원증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될 회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양수 혹은 수증받은 회원은 기 가입된 상품의 설명을 회사로부터 수령 및 설명을 받을 권리를 부여 받습니다.
2.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 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 금5,000(오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자와 양수자 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이해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는 이에 무관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된 기준 가격을 상회하는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명의변경 시, 기 불입된 회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고 잔여불입금에 대하여는 양수인 또는 수증인이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집니다.
5. 기 가입된 양도인 혹은 증여자의 계좌에 연체금이 있을 경우 명의변경은 원칙상 불가하며 당시까지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17조 (계약의 종료)

- 본 약관에 따른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은 다음 각항의 사유가 발생된 때 계약의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1. 회원에게 장례서비스가 완료되고 계약된 회비가 완납된 때
 2. 회비의 완납이 이루어진 후 회원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된 때
 3. 철거권의 행사(제4조), 계약의 해지(제15조)가 발생한 때

■ 제18조 (회원의 유고)

회원의 유고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민법상 상속지분에 의합니다.

■ 제19조 (회원이 준비한 품목)

회원이 직접 구입한 장례용품 일부품목이 장례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회사는 계약금액에서 해당 물품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의무는 없으며 대체 물품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 제20조 (출동비 청구 및 행사관련사항)

1. 회원의 장례서비스 요청에 의해 장례지도사 팀이 출동하였으나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행사진행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출동비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행사장 도착 후 취소 시 : 250,000원
 - 초도행사까지 마친 후 역무행사 취소 시 : 500,000원
2. 제1항의 경우에 회원이 해당 상품의 해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취소비용은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합니다.
3. 회원은 장례서비스 도중 장례전담 행사 팀으로부터 계약된 상품 패키지 이외의 물품 강요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제21조 (개인정보의 활용)

회사는 장례서비스의 원활한 진행과 보다 나은 고객 만족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회원의 동의하에 회사가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사내, 업무처리를 위한 수탁업체에서만 활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22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의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제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제23조 (약관의 시행)

본 약관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 60회 패키지상품의 회차별 해약환급율표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1	0.0%	11	51.6%	21	71.1%	31	78.0%	41	81.5%	51	83.7%
2	0.0%	12	55.0%	22	72.0%	32	78.4%	42	81.8%	52	83.8%
3	0.0%	13	57.9%	23	72.9%	33	78.9%	43	82.0%	53	84.0%
4	0.0%	14	60.4%	24	73.8%	34	79.3%	44	82.3%	54	84.2%
5	2.5%	15	62.5%	25	74.5%	35	79.6%	45	82.5%	55	84.3%
6	17.5%	16	64.4%	26	75.2%	36	80.0%	46	82.7%	56	84.5%
7	28.2%	17	66.0%	27	75.8%	37	80.3%	47	82.9%	57	84.6%
8	36.3%	18	67.5%	28	76.4%	38	80.7%	48	83.1%	58	84.7%
9	42.5%	19	68.8%	29	77.0%	39	81.0%	49	83.3%	59	84.9%
10	47.5%	20	70.0%	30	77.5%	40	81.3%	50	83.5%	60	85.0%

■ 100회 패키지상품의 회차별 해약환급율표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1	0.0%	18	50.8%	35	71.1%	52	78.1%	69	81.6%	86	83.8%
2	0.0%	19	53.0%	36	71.7%	53	78.3%	70	81.8%	87	83.9%
3	0.0%	20	55.0%	37	72.2%	54	78.6%	71	81.9%	88	84.0%
4	0.0%	21	56.8%	38	72.8%	55	78.9%	72	82.1%	89	84.1%
5	0.0%	22	58.4%	39	73.3%	56	79.1%	73	82.2%	90	84.2%
6	0.0%	23	59.9%	40	73.8%	57	79.3%	74	82.4%	91	84.3%
7	0.0%	24	61.3%	41	74.2%	58	79.6%	75	82.5%	92	84.3%
8	0.0%	25	62.5%	42	74.6%	59	79.8%	76	82.6%	93	84.4%
9	9.2%	26	63.7%	43	75.1%	60	80.0%	77	82.8%	94	84.5%
10	17.5%	27	64.7%	44	75.5%	61	80.2%	78	82.9%	95	84.6%
11	24.3%	28	65.7%	45	75.8%	62	80.4%	79	83.0%	96	84.7%
12	30.0%	29	66.6%	46	76.2%	63	80.6%	80	83.1%	97	84.8%
13	34.8%	30	67.5%	47	76.5%	64	80.8%	81	83.2%	98	84.8%
14	38.9%	31	68.3%	48	76.9%	65	81.0%	82	83.4%	99	84.9%
15	42.5%	32	69.1%	49	77.2%	66	81.1%	83	83.5%	100	85.0%
16	45.6%	33	69.8%	50	77.5%	67	81.3%	84	83.6%		
17	48.4%	34	70.4%	51	77.8%	68	81.5%	85	83.7%		

■ 120회 패키지상품의 회차별 해약환급율표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회차	환급율 (%)
1	0.0%	21	49.6%	41	70.5%	61	77.7%	81	81.4%	101	83.6%
2	0.0%	22	51.6%	42	71.1%	62	78.0%	82	81.5%	102	83.7%
3	0.0%	23	53.4%	43	71.6%	63	78.2%	83	81.7%	103	83.8%
4	0.0%	24	55.0%	44	72.0%	64	78.4%	84	81.8%	104	83.8%
5	0.0%	25	56.5%	45	72.5%	65	78.7%	85	81.9%	105	83.9%
6	0.0%	26	57.9%	46	72.9%	66	78.9%	86	82.0%	106	84.0%
7	0.0%	27	59.2%	47	73.4%	67	79.1%	87	82.2%	107	84.1%
8	0.0%	28	60.4%	48	73.8%	68	79.3%	88	82.3%	108	84.2%
9	0.0%	29	61.5%	49	74.1%	69	79.5%	89	82.4%	109	84.2%
10	2.5%	30	62.5%	50	74.5%	70	79.6%	90	82.5%	110	84.3%
11	10.7%	31	63.5%	51	74.9%	71	79.8%	91	82.6%	111	84.4%
12	17.5%	32	64.4%	52	75.2%	72	80.0%	92	82.7%	112	84.5%
13	23.3%	33	65.2%	53	75.5%	73	80.2%	93	82.8%	113	84.5%
14	28.2%	34	66.0%	54	75.8%	74	80.3%	94	82.9%	114	84.6%
15	32.5%	35	66.8%	55	76.1%	75	80.5%	95	83.0%	115	84.7%
16	36.3%	36	67.5%	56	76.4%	76	80.7%	96	83.1%	116	84.7%
17	39.6%	37	68.2%	57	76.7%	77	80.8%	97	83.2%	117	84.8%
18	42.5%	38	68.8%	58	77.0%	78	81.0%	98	83.3%	118	84.9%
19	45.1%	39	69.4%	59	77.2%	79	81.1%	99	83.4%	119	84.9%
20	47.5%	40	70.0%	60	77.5%	80	81.3%	100	83.5%	120	85.0%

■ 만기납입후 해약환급율표

구분	환급율
1년 예치후 환급시	90%
2년 예치후 환급시	95%
3년 예치후 환급시	100%

※ 상품 만기 납입 후 해약환급율표에 의거 예치금 환급 요구시 년 단위로 정산됩니다.